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75
----------	-------

제출년월일 : 2024. 5. 17.

발 의 자 : 박은경, 송바우나, 현옥순

최진호, 황은화,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박태순

이진분, 김진숙 의원 (11인)

1. 제안이유

-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체육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한 정의(안 제2조)
-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지급신청 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첨부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 체육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7)